



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1·2·3학년) 안내

본교의 교육 활동에 항상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평가 지침에 따라 학습 계획을 세워 정기고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고사일시: 2023.7.3.(월) ~ 2023.7.5.(수) 08:50~13:25

2. 정기고사 중 출결과 인정기준점수 비율

가. 하루 단위로 인정 (무단, 부정행위 제외)

나. 고사 기간 중 증빙서류는 필수

- 증빙서류에는 결시 일자와 사유(병명 또는 증상)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출결과는 별도로 성적처리는 해당 인정기준점수 비율이 미적용 됨

다. 출결과 인정기준점수 비율 (증빙서류 제출 시)

- 공결 : 인정 결석(출석) / 인정기준점수 100%

- 질병 : 질병 결석(결석) / 인정기준점수 80%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 생리 : 인정 결석(출석) / 인정기준점수 80%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와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기타 : 기타 결석(결석) / 인정기준점수 80%

- 무단 : 미인정 결석(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부정행위 : 출석 / 0점 처리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3. 정기고사는 모든 학생이 예외 없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특별한 사유로 정기고사에 결시하는 경우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성적처리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 정기고사 기간과 정기고사 전·후 1주일간의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방침(성적처리 및 확인, 재시험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의 허락으로 출결은 인정결석으로 처리되나, 성적은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결시자에 준하여 처리함)

4. 성적 확인·정정 및 이의신청기간 : 2023. 7. 7.(금) ~ 2023. 7. 11.(화) [학사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적 확인·정정 및 이의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확인·정정·이의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5. 코로나-19로 인한 결시자 성적처리 (하루 단위로 적용)

가. 관련 근거: 2023학년도 코로나-19 대응 평가관련 지침(6.1일 이후) 및 2차고사 대비 중등 학생평가 유의사항 안내(중등교육과-5057, 2023.6.2.)

나. 코로나-19 확진 학생 및 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임

다. 코로나-19 확진 학생 및 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제출 필수

라. 코로나-19 확진 학생 및 유증상 학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 시험 응시를 허용하며, 분리 고사실에서 운영 (분리 고사실 시험 신청서 제출)

마.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당일 시험 과목별 선택적 응시 불가

->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는 불가하며, 시험 응시 허용 후 증상 악화에 따라 미응시한 경우 확진 내역 통보 서류 외 미응시일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인정비율 100% 부여, 미제출 시 인정비율 80% 부여

* 시험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당일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당일 치른 모든 시험과목은 무효 처리됨)

※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 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은 미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함.

6. 인정점 -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4조 (인정비율 및 인정점 관리)

2. 기준점수 산출 방법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다.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과목의 성적

-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동일 과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3.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나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 \times 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times 0.8$ (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2023. 6. 23.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